

부천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6. 1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7. 3) 상정 보류
- 제8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□ 개정이유

-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, 투명성, 신뢰성을 확보하고
- 국민의 「알권리」 충족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고,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
-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 및 환경친화적 이미지관리 관심제고로 고질적, 상습적 위법행위 근절 기여

□ 주요골자

-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공개대상 범위(행정처분, 업소)를 규정함(안 제2조)
- 공개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토록 규정함(안 제4조)
- 위반내용의 공개 전에 공개할 내용과 방법을 당해 업소의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토록 규정함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규 위반업소 공개시 업소는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다분히 있는 데 대해 의견은? ○ 대기 및 수질업소는 몇 개인가? ○ 도내에서는 어느 시·군이 제정되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해발생이 예방될 것임. 따라서 환경이 보호될 것임 ○ 각 500여 업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○ 도를 비롯하여 의정부, 구리, 여주시가 제정되었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위반업소에 큰 타격을 주지만 환경보호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는 필요함

나. 반대토론

- 지난 제79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위반업소에 이중처벌의 사유와 도내 다른 시·군이 아직 한 곳도 제정되지 않아 보유된 안전으로 여전히 위반업소에 이중처벌과 생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보유해야 함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338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, 투명성, 신뢰성을 확보하고
- 국민의 「알 권리」 충족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
-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 및 환경친화적 이미지관리 관심 제고로 고질적 상습적 위법행위 근절 기여

□ 주요골자

-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공개대상 범위(행정처분, 업소)를 규정함(안 제2조)
- 공개방법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토록 규정함(안 제4조)
- 위반내용의 공개 전에 공개할 내용과 방법을 당해 업소의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토록 규정함(안 제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 및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 대상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및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1.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
2.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
3.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개선명령
2. 조업정지명령
3. 허가취소
4. 사용중지(금지)명령
5. 폐쇄명령
6. 경고(병과 고발시)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현황 : 업소명, 소재지, 대표자, 업종
2.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
3.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

제3조(공개 방법) 시장은 인터넷·일간신문·반상회보 등에 업소의 위반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.

제4조(공개사항의 삭제)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전통지)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할 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·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